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8.

특 허 청
(디자인심사정 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49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출원인 등 고객편의 제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정비(안 제23조 및 제34호) 및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등)

디자인보호법 제36조제2항 삭제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규정 및 서식 개정
나.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제도개선(안 제68조)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 신청시 특허청장이 고시한 디자인 물품목록 명칭으로 기재할 경우, 번역확인서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다. 3D파일 제출형식 변경(별지 제2호 및 제3호)

현행 3D파일 제출형식을 안정성이 우수하고 WIPO 권장안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변경함

라. 화상디자인 출원간소화를 위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출원서 기재사항에서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삭제

마. 도면 식별항목표시 간소화(별표2, 안 별지 제2호 및 제4호서식)

【도면 □.△】을 【도면 △】로 일괄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6조제2항”을 각각 “제36조”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36조”로 한다.

제68조제3항 중 “서류”를 “서류(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목록 명칭으로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면에 대한 설명: 도면(사진 또는 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면별 설명

(예문) 도면 1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이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배면 부분은 정면 부분과 동일하고, 도면 3은 이 디자인의 윗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4는 이 디자인의 저면부에서 바라본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9는 도면 5상의 A부터 A'까지 부분의 절단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별표 2 제3호 및 같은 표 제4호 중 “1.1”을 각각 “1”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중 “도면A 1.1부터 도면A 1.7”을 “도면A 1부터 도면A 7”로, 같은 호 중 “도면B 1.1부터 도면B 1.7”을 “도면B 1부터 도면B 7”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도면A 1.1부터 도면A 1.7”을 “도면A 1부터 도면A 7”로, 같은 호 중 “도면B 1.1부터 도면B 1.7”을 “도면B 1부터 도면B 7”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1) 및 2) 중 “제36조제2항”을 각각 “제36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1) 및 2) 중 “제36조제2항”을 각각 “제36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1) 및 2) 중 “제36조제2항”을 각각 “제36조”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1) 및 2) 중 “제36조제2항”을 각각 “제36조”로 하고, 같은 뒤쪽 사목 중 “3DS(3D Studio), DWG(Drawing), DWF(Design Web Format),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3DM(3 Dimensional Modeling)”를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1호 공지예외적용 보완 증명서류의 관련 규정란 중 “「디자인보호법」 제36조제2항”을 “「디자인보호법」 제36조”로 한다.

보정(절차보완)서

(앞쪽)

【보정 구분】 ☐ 출원서 등 보정 ☐ 도면 등 보정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출원서 보완

【제출처】 ☐ 특허청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

【보정(보완, 보충)방법】

【보정(보완, 보충)내용】

(【그 밖의 사항】 ☐ 재심사청구 ☐ 지정기간단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방법 제10호를 참조합니다)

【보정료】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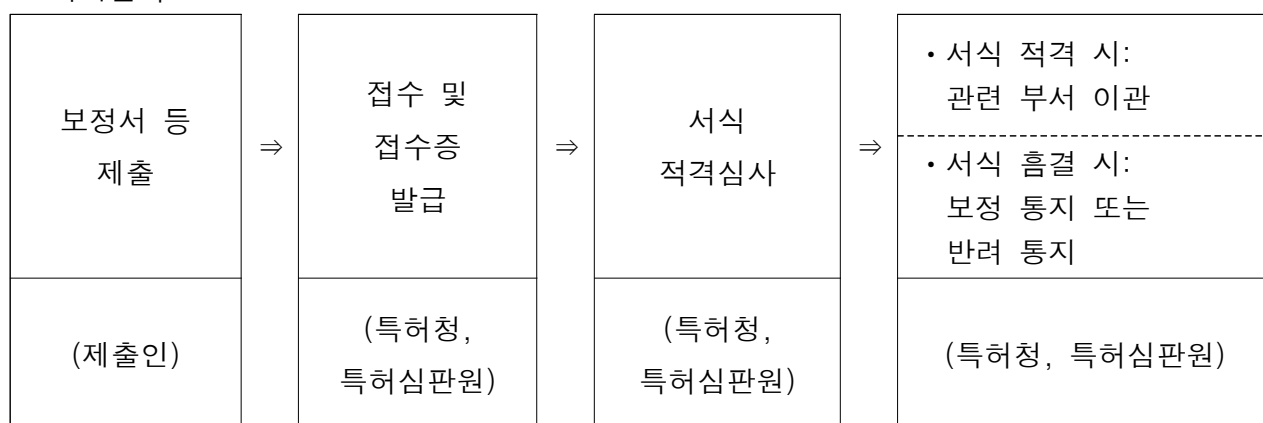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방법 제12호를 참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1. 보정 구분 및 관련 규정

보정 구분	내용	관련 규정
출원서 등 보정	출원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書誌)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도면 등 보정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이의신청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2조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심판청구서 등 보충	보충요구서를 통지받고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충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절차보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서 출원을 보완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2. 처리절차



※ 기재방법

1. 【보정 구분】란

보정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처】란

가. 제출처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심판청구와 관련된 보정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다. 재심사청구와 관련된 보정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1) 【특허고객번호】란을 기재하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 2) 【주소】란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라. 공통

-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이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5. 【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란 또는 【심판번호】란에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으며,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의 경우에는 【출원번호】의 다음 행에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서 등 보정에서 보정할 서류가 법정기간연장신청과 관련된 경우에는 【출원번호】란에 해당 출원번호를 적고, 【심판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 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30-2010-1234567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DM/123456 또는 DM/123456A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 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30-2010-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사건 구분-일련번호(6자리)	2010-당-123456

6.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가. 특허청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1-1-00-1234567-12

다.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7.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란

보정, 보완 또는 보충하려는 서류의 명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1]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예 2] 【보충할 서류】 심판청구서

8.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란

가. 하나의 보정서로 도면, 출원서, 그 밖의 서류의 서지(書誌)사항의 보정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도면의 보정과 서지사항의 보정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출원서 등 보정, 절차보완, 이의신청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정(보충)의 경우

- 1)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란, 【보정(보완, 보충)방법】란 및 【보정(보완, 보충)내용】란에 각각 해당 내용을 적고, 보정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 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첨부서류

【보정방법】 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수수료

【보정방법】 납부

【보정내용】 미납 수수료

- 2)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 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 항목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창작자의 **【주소】** 등) 단위의 보정은 불가능하므로 대상 항목을 대항목 단위로 적습니다.

[예] **【보정대상 항목】** 창작자, 우선권 주장, 첨부서류 등

- 3) **【보정(보완, 보충)방법】** 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적고, 하나의 식별 항목에 둘 이상의 보정방법을 적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여러 개로 구성되는 식별 항목(창작자, 대리인 등) 중 일부내용(대리인 3명 중 1명)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보정방법을 “정정”으로 적습니다.

[예] **【보정방법】** 정정, 추가

- 4) **【보정(보완, 보충)내용】** 란에는 보정대상 항목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내용을 적고, 보정대상 항목이 반복되거나 소항목이 있는 경우(창작자, 우선권 주장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 항목의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보정방법이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 보정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정내용을 표시하며,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보정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를 전문(全文) 보정하여 첨부합니다.

[예]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창작자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1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123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2

- 5) 출원인 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창작자가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을 이용하여 보정합니다.

6) 복수디자인출원 중 일부디자인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란에 보정하려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고, 【보정(보완, 보충)내용】란에는 해당 디자인의 서지사항 일부(【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부터 【부분디자인 여부】까지, 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까지), 화상디자인인 경우에는 【화상디자인의 용도】를 추가로 보정하여 새로 작성한 내용을 적고, 보정내용이 해당 디자인의 서지사항에 대한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정된 내용임을 표시합니다.

[예 1] 부분디자인인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디자인의 창작자의 주소를 정정하고 창작자를 1명 추가하며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를 정정하는 경우(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을 적지 않거나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 아님”이라고 적습니다)

【보정대상 항목】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피아노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7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1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568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2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US

【출원종류】 디자인

【출원번호】 2010-123456

【출원일자】 2010. 01. 03.

【증명서류】 첨부

[예 2] 화상디자인인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5 디자인의 창작자의 주소를 정정하고 창

작자를 1명 추가하며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보정대상 항목】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5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정보통신용 화상

【화상디자인의 용도】 스마트폰 조작용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7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1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568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2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US

【출원종류】 디자인

【출원번호】 2010-123457

【출원일자】 2010. 01. 03.

【증명서류】 첨부

7)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적고,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적고,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적으며, 아울러 디자인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란에 【그 밖의 수수료】란을 만들어 추가되는 디자인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예 1]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출원 구분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출원 구분】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예 2]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출원 구분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출원 구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예 3]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출원 구분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출원 구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복수디자인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디자인의 수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디자인의 수】 3

8) 관련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거나 단독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적습니다.

[예 1] 관련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인 경우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예 2] 단독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인 경우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관련디자인

【보정대상항목】 기본디자인의 표시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등록, 참조)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 9)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하면서 「디자인보호법」 제3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예와 같이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란의 다음 줄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개형태】** 및 **【공개일】** 란을 각각 만들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디자인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란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해당 서류를 보정서에 첨부합니다.

[예]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개형태】 간행물예의 발표

【공개일】 2010. 07. 01.

다. 도면 등 보정의 경우

- 1)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도면”으로 적습니다.

[예] **【보정할 서류】**

【서류명】 디자인도면

또한, 복수디자인출원 중 일부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란에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1] **【보정할 서류】**

【서류명】 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3

[예 2] **【보정할 서류】**

【서류명】 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보정할 서류】

【서류명】 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3

- 2)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 란, **【보정(보완, 보충)방법】** 란 및 **【보정(보완, 보충)내용】** 에는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3) 별지에는 **【보정대상 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 란을 만들어 적으며, 보정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 항목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복수디자인출원 중 둘 이상의 디자인에 대하여 도면을 보정할 경우에는 각 디자인별로 면을 바꾸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은 후 **【보정할 서류】**, **【보정대상 항목】**, **【보정방**

법】 및 【보정내용】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보정대상 항목】 도면 1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정정한 도면 1

[예 2] 【보정대상 항목】 참고도면 3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참고도면 3

[예 3] 【보정대상 항목】 참고도면 1

【보정방법】 삭제

- 4) 【보정대상 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 항목명을 적고, 【보정방법】란에는 “추가”, “삭제”, “정정” 중 하나만을 적으며, 보정방법을 복수로 적을 수 없습니다. 보정방법이 “추가” 또는 “정정”인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에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을 적고, 보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을 삭제합니다.
- 5) 도면 중의 모든 식별 항목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 【보정대상 항목】이 “디자인의 설명” 또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인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에 해당 식별 항목의 내용을 모두 새로 작성하여 적습니다.
- 7) 도면을 출원하였으나 디자인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 변화 전·후의 상태를 각각의 도면에 표현하려는 경우 등)에는 새로 추가되는 도면에는 기존의 도면과 구별할 수 있도록 다음 예와 같이 도면B로 구별하여 【도면B 1】 , 【도면B 2】 , 【도면B 3】 … 순으로 적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별도 알파벳 문자가 없는 도면 1부터 도면 7까지이며,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도면B 1, 도면B 2, 도면B 3 … 등으로 표시한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러 벌의 도면 간의 구분기준을 명시합니다.

[예 1] 새로운 벌의 도면이 추가되는 경우

【보정대상 항목】 도면B 1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도면B 1

[예 2] 기존 도면의 일부가 수정되고 새로운 한 벌의 도면이 추가되는 경우

【보정대상 항목】 도면 1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정정한 도면 1

【보정대상 항목】 도면B 1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도면B 1

9. 【그 밖의 사항】란

가. 도면 등 보정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른 기간에 심사관에 의한 거절결정서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란의 재심사청구 선택란에 표시합니다.

[예] 【그 밖의 사항】 ☒재심사청구

나. 출원서 등 보정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디자인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기간에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지정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란의 지정기간단축신청 선택란에 표시합니다.

[예] 【그 밖의 사항】 ☒지정기간단축신청

10. 【수수료】란

가. 【수수료】란은 서식제출 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보정료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보정료】란에,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줄에 【그 밖의 수수료】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합계】란에는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심판청구서 등 보충의 경우에는 【수수료】란을 삭제합니다.

[예] 【수수료】

【보정료】

【그 밖의 수수료】

【합계】

나. 거절결정 이후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정료】란을 다음 예와 같이 【재심사청구에 따른 보정료】란으로 수정하여 해당 금액을 적고, 【합계】란에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예] 【수수료】

【재심사청구에 따른 보정료】

【합계】

다.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합계】란의 다음 줄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11.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2.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방법 제3호, 제4호 및 제8호를 참조합니다)

나. 【첨부서류】란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또는 AVI(Audio Video Interleave)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에는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480) 수준에 초당 용량이 600~700K/sec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 별표 1의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을 대신하여 폰트파일[TTF(True Type Font)]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디자인등록출원 이후 보정 등을 위해 다시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 시 제출 가능한 파일 형식]

디자인의 종류	출원 시 제출파일 형식		보정 시 제출파일 형식	허용 여부
평면, 입체, 화상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TIFF, JPEG), 3D모델링파일 제출(IGES, OBJ, STEP, STL),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TIFF, JPEG, IGES, O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IGES, OBJ, STEP, STL)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TIFF, JPEG, IGES, OBJ, STEP, STL)	허용

	참고 도면	BJ, STEP, STL)	⇒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3D모델링파일 제출 (IGES, OBJ, STEP, STL),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과 3D 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3D모델링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 3D 모델링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IGES, OBJ, STEP, STL)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TIFF, JPEG, IGES, OBJ, STEP, STL)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3D모델링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3D모델링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글자체 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폰트파일 제출 (TTF),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폰트파일(TTF)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허용
	참고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폰트파일 제출 (TTF),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과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폰트파일(TTF)	허용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 PEG, WMV, Animated GIF, AVI),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TF, SWF, MPEG, W MV, Animated GIF, A VI),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S WF, MPEG, WMV, Ani mated GIF, AVI)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13.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

(앞쪽)

- 【출원 구분】 ☐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디자인의 수】)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창작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출원일(국제등록일)】

【증명서류】 ☐ 첨부 ☐ 미첨부

【접근코드】)

(【그 밖의 사항】

☐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 디자인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방법 제16호 참조)

【출원료】

개 디자인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1. 도면(사진·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합니다)

2.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18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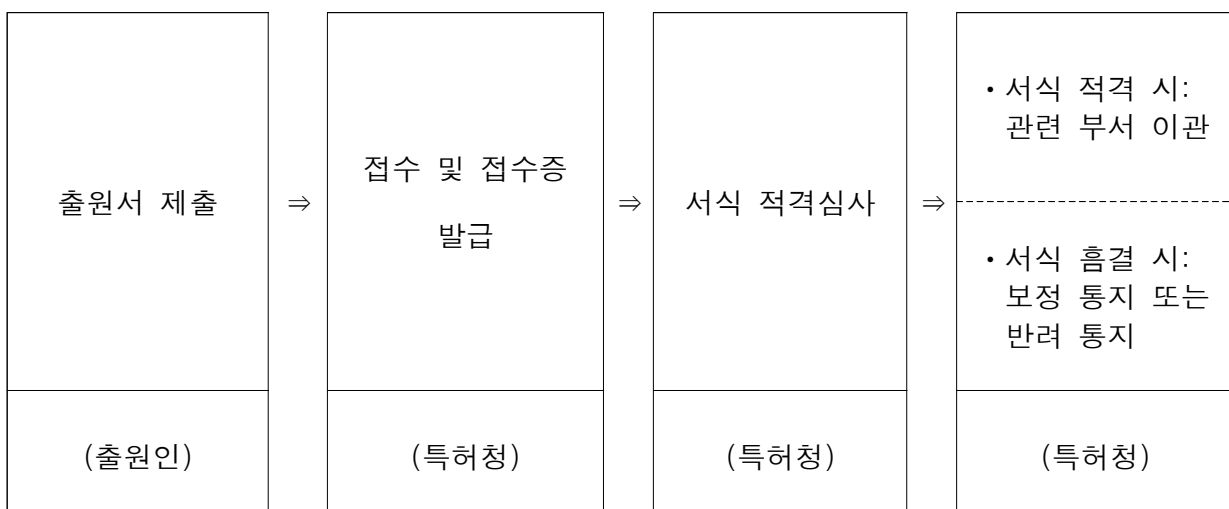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1. 출원 구분 및 관련 규정

출원 구분	내용	관련 규정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등록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등록 대상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8조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1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에 대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0조 및 제18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1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0조 및 제18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무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2. 처리절차



※ 기재방법

1. 【출원 구분】란

가. 출원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해당되는 물품류(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를 제외한 물품류가 해당됩니다.

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의 물품류가 해당됩니다.

2. 【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예와 같이 【출원 구분】란의 다음 줄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제출매체(온라인, 이동식저장장치, 서면)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출원 구분】

【참조번호】 01

3. 【출원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출원과 동시에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고,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3)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을 한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그 밖의 사항】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4. 【대리인】란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5.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란

가.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란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나 국제등록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30-2010-1234567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6.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란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란에는 해당 여부를 “단독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과 같이 적습니다.

7. 【기본디자인의 표시】란

이 난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적으며,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란에는 기본디자인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중 하나를 적고,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추가로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에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가.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한 개의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의 일련번호】만을 적습니다.

나.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동시에 각각 별개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참조번호】 01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다. 기본디자인등록출원 이후 관련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라. 기본디자인 설정등록(2014년 7월 1일 전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여 설정등록된 것만 해

당합니다) 이후 관련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등록번호】 30-1234567-00-00

【디자인의 일련번호】 M08

마. 위의 기재방법 중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은 기본디자인이 1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으며,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으로 출원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그 기본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8.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

【기본디자인의 표시】란 다음 줄에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1디자인” 또는 “복수디자인”과 같이 그 구분을 명시합니다.

9. 【디자인의 수】란

가. 1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개수를 적을 필요가 없으며,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만 디자인의 개수(최대 100개까지)를 적습니다.

나. 디자인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의 수】란의 다음 줄에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고 디자인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물품류】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부분디자인 여부】 ,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 (【기본디자인의 표시】) , 【창작자】 및 (【우선권 주장】)란을 디자인의 수만큼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은 부분디자인이고,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는 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창작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

【증명서류】)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창작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

【증명서류】)

10. 【물품류】란

가. 이 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하나의 물품류를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물품류】 제1류

나.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물품류에 14류를 기재하며,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은 해당 물품류를 기재합니다.

1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가. 이 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고시에 등록받으려는 물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디자인을 인식하는 데 적합한 명칭으로서,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칭을 적습니다.

나.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 중 한 개의 물품명을 적으며, 물품의 부분의 명칭(예: 커피잔의 손잡이)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커피잔

다.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다음의 예와 같이 화상의 구체적인 용도(~용 화상)를 기재하며,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화상디자인, 화상 등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정보통신용 화상, 의료정보처리용 화상, 방법용 화상, 정보표시용 화상, 건강관리용 화상 등

라.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한 벌의 물품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12. 【부분디자인 여부】란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다음 줄에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부분디자인”이라고 적습니다. 부분디자인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13. 【창작자】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적은 국문 성명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1) 【창작자】란에 창작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및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 2) 창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소】란의 다음 줄에 【국적】란을 만들어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은 삭제하며,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적습니다.
- 3) 【창작자】란의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14. 【우선권 주장】란

【우선권 주장】란은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한 【출원국명】,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적고, 우선권 주장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첨부”라고 적으며, 그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미첨부”라고 적습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에 따라 접근코드를 적으려는 경우에는 【접근코드】란에 해당 접근코드를 적고 접근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지 않으며,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98-123456

【출원일】 1999. 07. 01.

【증명서류】 첨부

【접근코드】 4321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62-1234

【출원일】 1999. 08. 01.

【증명서류】 미첨부

【접근코드】 8765

15. 【그 밖의 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구분	내용	관련규정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2조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6조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이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6항

나.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하는 경우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줄에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및 【청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적고,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3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기재방식은 “등록일부터 ○○개월”과 같이 적습니다.

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는 경우

출원과 동시에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줄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개형태】 및 【공개일】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첨부서류】란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개형태】 간행물예의 발표

【공개일】 2010. 07. 01.

라.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행에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이전대가】란을 만들고 희망하는 디자인이전 형태 및 대가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예: ☒)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전을 희망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공개 또는 등록공고 후 디자인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에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으로 등록됩니다.

[예] 【디자인이전희망】 ☐ 양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예] 【디자인이전대가】 ☐ 유상 ☐ 무상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행에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과제

수행기관명】 및 【연구기간】 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은 디자인에 대해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과제고유번호】 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 【과제번호】 란은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과제별로 부여하는 세부과제번호를 적습니다. 【과제관리(전문)기관명】 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사업명】 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히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구과제명】 란은 각 부처 또는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부과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기여율】 란은 이 발명을 지원한 과제가 1개인 경우에는 1/1로 적고,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별 기여율을 ○/□과 같이 분수로 적되, 총합이 1이 되도록 적습니다. 【과제수행기관명】 란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기간】 란은 해당 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적습니다.

[예] 【그 밖의 사항】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과제관리(전문)기관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사업명】 미래선행디자인기술개발

【연구과제명】 스마트홈 환경 구현을 위한 지능형 감성제품 서비스 선행디자인 개발

【기여율】 1/2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기간】 2019. 4. 1. ~ 2020. 12. 31.

16. 【수수료】 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명세 및 금액을 적습니다. 【출원료】 란에는 디자인의 개수 및 출원료 금액을 적고, 아울러 출원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 란을,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 란을,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료】 란을 각각 만들어 각 해당 금액을 적고, 【합계】 란을 만들어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개 디자인	원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		원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	개 디자인	원
【우선권 주장료】	개 디자인	원
【합계】		원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 란의 【합계】 란의 다음 줄에 【감면

【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 날까지 납부합니다.

17.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8. 【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출원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00]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출원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0]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디자인 도면) 또는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또는 AVI(Audio Video Interleave)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에는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480)수준에 초당 용량이 600~700 K/sec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차. 도면을 전자적 이미지파일 또는 3차원 모델링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거나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 하나의 디자인 제출 시 파일 형식

디자인의 종류	출원 시 제출파일 형식		허용 여부
평면, 입체, 화상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 제출 (IGES, OBJ, STEP, STL)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허용
	참고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 제출 (IGES, OBJ, STEP, STL)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3D모델링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3D모델링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글자체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폰트파일 제출 (TTF)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허용
	참고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폰트파일 제출 (TTF)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 복수디자인의 제출 시 파일 형식

※ 복수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파일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종류	M001의 제출파일 형식		M002의 제출파일 형식	허용 여부
평면, 입체, 화상디자인, 물품의 부분 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3D모델링파일 제출 (IGES, OBJ, STEP, STL),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3D모델링파일(IGES, OBJ, STEP, STL)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TIFF, JPEG, IGES, OBJ, STEP, STL)	허용
	참고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3D모델링파일 제출 (IGES, OBJ, STEP, STL),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	3D모델링파일(IGES, OBJ, STEP, STL)	허용

		Animated GIF, AVI), 2D이미지 파일과 3D모델링 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 S, OBJ, STEP, STL), 2D이미지 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 WF, MPEG, WMV, Animated GIF, AVI), 3D모델링 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IGES, OBJ, ST EP, STL, SWF, MPEG, WMV, A nimated GIF, AVI), 2D이미지 파일, 3 D모델링 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 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 파일의 혼합(TIFF, JPEG, IGES, OBJ, STEP, STL)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3D모델링 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3D모델링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글자체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폰트파일 제출 (TTF), 2D이미지 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제출 (TIFF, JPEG, TTF)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폰트파일(TTF)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허용
	참고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폰트파일 제출 (TTF),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 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제출 (TIFF, JPEG, TTF),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폰트파일(TTF)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19.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디자인 도면

(앞쪽)

(【디자인의 일련번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1】

【도면 2】

【도면 3】

【도면 4】

【도면 5】

【도면 6】

【도면 7】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관련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 관련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2항).

※ 기재방법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 [보존용지(2종) 70g/m²]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위쪽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위쪽 40mm, 왼쪽 25mm, 아래쪽 및 오른쪽 20mm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적으며, 용지의 아래쪽 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

다. 도면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진한 먹물 또는 제도용 검은색 잉크로 선명하게 도시(圖示)하며, 연필, 잉크(제도용 검은색 제외), 크레파스 또는 그림물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된 이미지파일(300dpi 이상의 해상도) 형식인 경우에도 위에 준하여 도시합니다. 다만,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 시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무채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 도면 내에는 중심선, 기선(基線), 수평선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細線) 또는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 부호 또는 문자를 적어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음영을 넣을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濃淡)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면을 표시할 경우 절단된 부분에 해칭(연속된 빗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식별 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와 식별 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 식별 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식별기호(【 】)는 식별 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도면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할 수 있으나, 도면 내용의 윗부분이 용지의 오른쪽이 되도록 배치하며, 【도면 ○】 식별항목은 가로(횡)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4) 도면의 기재순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우선 순위로 하여 【도면 1】 , 【도면 2】 , 【도면 3】 … 순으로 적습니다.

그 이외에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상태도 등을 【참고도면 1】 , 【참고도면 2】 , 【참고도면 3】 … 순으로 식별 항목을 만들어 적되, 그 도면의 명칭은 다음 [예]와 같이 【참고도면 ○】 란의 다음 줄에 적습니다.

[예] 【참고도면 1】

사용상태도

해당 도면
내용

5) 디자인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변화 전·후의 상태를 각각의 도면에 표현하려는 경우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도면의 식별 항목명에 영문자 대문자(A, B...순)를 적어서 구분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통상적인 디자인의 설명을 먼저 한 후에, “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이며,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구분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화상디자인 및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출원은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라도 각 도면의 식별 항목명을 영문자 대문자로 구분하지 않고 4)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A 1】

【도면A 2】

【도면A 3】

【도면A 4】

【도면A 5】

【도면A 6】

【도면A 7】

【참고도면A 1】

【참고도면A 2】

【도면B 1】

【도면B 2】

【도면B 3】

【도면B 4】

【도면B 5】

【도면B 6】

【도면B 7】

【참고도면B 1】

【참고도면B 2】

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물품류】란의 위에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3

【물품류】 제1류

바. 도면의 쪽수가 여러 쪽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디자인마다 각 페이지 아랫부분의 여백 중앙에 도면의 총 쪽수와 해당 쪽과의 일련관계를 표시합니다.

[예] 3-1, 3-2, 3-3

2. 도면의 작성방법

가. 도면의 기초정보

- 1) 【물품류】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것과 같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물품류를 적습니다.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것과 같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 3) 【디자인의 설명】란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에 따라 적습니다.
- 4)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 1) 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도면을 도시(圖示)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으며,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도면 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디자인의 앞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3은 디자인의 뒷면을, 도면 4는 디자인의 왼쪽면을, 도면 5는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도면 6은 디자인의 윗면을, 도면 7은 디자인의 아랫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예 2] 도면 1은 디자인의 표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디자인의 이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예 3] 도면 8은 도면 3 중 A부터 A'까지의 절단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9는 도면 4 중 A부분의 확대를 표현하는 도면임.

- 2) 1)항의 도면만으로 그 디자인의 용도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상태도 등 참고도면을 【참고도면】란에 도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참고도면 1은 이 물품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것임

- 3) 물품의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하여도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있거나, 도면 작성상 생략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생략한 부분을 두 선의 평행한 1점쇄선(鎖線)으로 절단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취지 및 생략한 부분의 도면상 길이를 적습니다.

- 4) 봉재(封材), 선재(線材), 판재(版材), 관재(管材) 등과 같이 형상이 연속하는 것 또는 지물(紙物)과 같이 모양이 연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것을 표시하는 도면은 그 연속 또는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상태를 알 수 있게 도시하며,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어느 한 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것인지 등을 적습니다.

- 5)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의 절단면에는 평행사선을 긋고(이질의 결합에 따른 디자인적 표현을 나타내려면 각기 다른 방향의 평행사선을 긋습니다), 그 절단된 부분을 그 밖의 도면에서 쇠선으로 표시하되, 쇠선의 양끝에 부호를 붙이고 화살표로 절단면을 보는 방향을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 6) 부분 확대도를 도시할 경우에는 그 확대한 부분을 해당 부분 확대도의 원래의 도면에 쇠선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다.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

- 1) 조립완구와 같이 그 구성물의 도면만으로는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 만들어지는 상태 또는 완성된 상태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고, 조립한 후 분해하는 것과 같이 조립한 상태의 도면만으로는 분해된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각 구성물의 도면을 추가합니다.
- 2) 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움직임 또는 열림에 따라 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일련의 도면을 도시하거나 변화 전과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을 각각 도시하고,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는 열린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면B 1부터 도면B 7은 닫힌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임

- 3)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의 도면은 다음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 ① 바깥쪽 둘레에 색채가 없어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대로 표시합니다.
 - ② 바깥쪽 둘레의 바깥면·안쪽면 또는 그 두께면의 어느 한 부분에 모양 또는 색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면 또는 밑바닥의 모양 또는 색채를 나타내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 또는 색채만을 나타냅니다.
 - ③ 바깥쪽 둘레의 바깥면·안쪽면 또는 그 두께면이나 바깥쪽에 둘러싸인 내부의 어느 곳에 둘 이상의 형상·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형상·모양 또는 색채를 각 면에 표시합니다.

라. 부분디자인의 도면

- 1)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은 파선(破線)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 2) 부분디자인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 3) 부분디자인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채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부분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해당 부분을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습니다.
- 5) 그 밖의 작성방법은 이 서식의 기재방법 제2호 도면의 작성방법 중 나목(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및 다목(특수한 디자인의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마. 화상디자인의 도면

- 1) 화상디자인이 평면적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평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인 경우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입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2) 화상디자인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체에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고,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그 밖의 기재방법은 라목의 부분디자인 도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3)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변화의 순서와 형태가 분명해야 하며, 형태의 관련성 및 변화의 일정성이 있어 구체적인 하나의 디자인의 내용으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각각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합된 상태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합니다. 또한 도면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도면A 1부터 도면A 7은 찻잔이고,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는 받침접시이며, 도면C 1부터 도면C 7까지는 한 벌의 다기 세트임.

3. 참고사항

가. 도면이 2면 이상으로 된 경우 처음 면 외의 면에는 【물품류】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디자인의 설명】란 및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도면을 갈음하여 서면으로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가로 10cm × 세로 15cm 이하, 최소 가로 7cm × 세로 10cm 이상의 크기로 하여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며, 배경·음영 등이 디자인의 대상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모든 도면을 사진으로 통일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진이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습니다.

다. 도면을 갈음하여 서면으로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쉽게 파손되거나 변경·변질되지 않을 것
- 2) 취급 및 보존이 쉬울 것
- 3) 용지에 붙이는 경우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 4)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한 개와 견본의 사진(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히 표현된 사진 각 1통)을 각각 이 서식에 첨부할 것

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이 서식의 기재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두 개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 1) 도면 내용의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 2) 디자인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 3)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의 형식으로 완전히 삽입·저장되어야 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Dynamic Data Exchange)]의 형식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또는 AVI(Audio Video Interleave)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에는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 480) 수준에 초당 용량이 600~700K/sec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서류의 원용)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서류의 원용) ① ----- ----- ----- ----- 제36조 ----- ----- ----- ----- ----- ----- ----- ----- -----.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 ----- ----- 제36조 ----- -----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6조----- -----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68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휴대용)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권자, 창작자 등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제68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류(특허청
장이 고시한 물품목록 명칭으로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현행과 같음)